(16-012) ○○ 리모델링현장 외부비계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 숙박시설 리모델링공사			
사고일시	2016년 03월 20일(일) 13:09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서울시 중구 다동	사고종류	붕괴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부상 1명	
장비 손실	_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),	해당없음(○)

Ⅱ 공사개요

o 공사종류: 숙박시설 o 연면적: 6,259㎡

o 규모: 지하 1층/지상 9층

2 사고경위

사고개요

o 건축물 외벽 돌붙임 작업 중 공사장 가림막(외부비계) 일부가 붕괴되어 차량 7대 파손 및 작업자 1명 부상.

③ 사고원인

o 건축물 외벽 돌붙임 작업을 위해 외부비계 고정대(벽연결재) 일부를 해체 (2층 전면부)함에 따라 상부 가설구조물 및 시공하중에 의해 저층부에서부터 좌굴이 진행되어 붕괴(외부가림벽 높이 : 약 27m, 전체 약100m 연장 중약 40m 구간 붕괴)된 것으로 추정.

o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·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재발방지 대책

- o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,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- o 비계 조립 전에 구조, 강도,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,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- o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사의 종류, 규모,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.
- o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,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.
- o 작업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,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- 157 -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(현장 가림막 파손)



사고 사진

사고현장(현장 가림막 파손)